

부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2. 11) 상정
-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2. 11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권 희 춘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구체화되어 있어,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동 조례 폐지”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특이사항 없음.	○ 특이사항 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 음

나. 반대토론

없 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336호
의결 년월일	2008. 12. 22. (제148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1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폐지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구체화되어 있어,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“동 조례 폐지”

□ 첨 부 :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

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현행조례)

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

제정 1990. 06. 21 조례 제1051호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 및 기준)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.

제3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1990. 6. 21 조례 제105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